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9월 13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 9. 23)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현주 교육청소년 과장)

가.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의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규정 추가(안 제2조제5의2 및 제5의3)

라.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4조 ~ 제8조)

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서, 유치원장·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명권)

-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종합검토 결과

- 안 제1조에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¹⁾를 추가하여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학교와 교육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포항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1)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신청서 제출에 대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안 제9조에는 유치원장의 보조금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 교구의 구입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